

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정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17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1.

발의자 : 정인화 · 홍문표 · 진선미
주승용 · 황주홍 · 윤영일
최도자 · 이용주 · 김종회
송기석 · 이동섭 · 박준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별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.

이에 별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별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1조).

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3항 전단 중 “3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1조(별 칙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3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.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</p> <p>④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1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⑤ (생 략)</p>	<p>제31조(별 칙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<u>5천만원</u>----- ----- -----.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<u>2천만원</u>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